
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

2020. 2. 26.

1.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운영방안.....	1
2.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	3
3. 공동보증 프로그램 신설	4
4.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	5

금 융 위 원 회

- ◆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,000개(+a)를 선정하여, 종합적, 적극적, 대규모 자금지원 : 40조원

< 도입배경 >

- ①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
- ② 금융-산업 간,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
 - 금융부문은 산업부문의 기업평가 능력, 전문성을 활용하고 산업부문은 종합적인 금융지원 채널을 확보

< 운영방안 >

- ① 산업부, 중기부, 시장 추천 등으로 혁신기업群 선정(1,000+a)
 - ①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기업지원 프로그램* 등 전문성을 갖춘 심사체계를 통해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
 - * 월드클래스 300(산업부), 강소기업 100(중기부), K유니콘(중기부)
 - ② 금융회사, 벤처캐피탈(VC) 거래 기업중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받아 심사(정책금융기관 협의체)를 거쳐 선정
- ② 정책금융기관 협의체*를 통해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
 - * 산은(간사)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, 성장금융,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 / 기존의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활용
 - ① 지원제도 안내 → 전담기관(RM) 배정 → 심층상담·자금지원 → 지원결과 피드백 등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
 - ② 지원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, 타 기관 협업(공동지원)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통해 조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

③ 혁신기업에 대해 종합적, 적극적으로 금융지원(40조원)

① [대출] 혁신성·성장가능성 위주 심사*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는 대출을 적시에 공급(3년간 최대 15조원)

*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,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(예 : 산은 「신산업 심사체계」)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지원

- 기업의 자금수요, 혁신성·성장가능성 등에 따라 지원한도 상향·우대금리 지원 등 혜택 부여

② [투자] 정책금융(산은·성장금융 등), 민간금융사,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재원*을 통해 적극적 투자 유도(3년간 최대 15조원)

* 정책금융(성장지원펀드), 은행권, 대·중견기업(SI), 연기금(FI) 등 참여

③ [보증] 담보력이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증지원*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 유도(3년간 최대 10조원)

* 혁신기업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(「신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」)를 활용

④ 글로벌 플레이어를 선정하여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지원

① 민간투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기업郡 중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선정(30개+a)

② 국내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자금 유치 기회 (특별 투자설명회* 등)를 제공

* 산은 MEGA7 Club 활용 비공개 투자설명회, 산은 Next Round 스페셜 세션 등

< 혁신기업 1000 운영 프로세스 >



< 향후계획 >

□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용 발표(3월)

2

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: '한국형 Paydex'

◆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'상거래 신용' 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개발

□ [도입배경] 주요 비금융정보인 상거래신용*을 기업평가에 반영

* 연체여부 등 지급결제 행태, 매출·매입 발생빈도, 회수기간 등

※ 미국에서는 상거래정보를 활용한 Paydex*를 활발하게 이용중

* 사업자번호(DUNS 번호) 부여시 상거래채권 관련 기록 제공을 의무화 → 이를 토대로 Paydex 산출 → 은행·거래기업이 대출·외상거래시 활용

□ [도입방안] DB 구축^① → 상거래신용지수 개발^② → 활용^③

① 신보가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와 외부데이터(금융결제원, 고용정보원)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거래 DB 구축

② 상거래 DB를 기반으로 결제기간¹⁾, 기업의 활동성²⁾, 결제능력³⁾ 등을 평가하고 이를 결합하여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

* 1) 동종업계 평균 대비 결제기간 2) 고용인원, 전력사용량 3) 거래처 수 등

③ 은행·기업에 등급 제공, 연계 보증상품¹⁾ 출시, 민간CB와의 협업²⁾ 등을 통해 상거래 신용지수 사용을 확산

* 1)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상거래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
2) 신보의 데이터와 CB사 보유 동태적 데이터(ex. 통신·뉴스·무역 정보)를 결합하여 CB사의 파생 인덱스(ex. 기업 활동성 인덱스) 개발

< 상거래 지수 도입방안 >



□ [향후계획] 상거래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 출시('20.3월)

◆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보증 프로그램 도입

- [도입배경] 현재의 '개별 기업단위' 심사방식의 한계를 보완
 - 과거 매출실적,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단위 심사 시스템 하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
- ⇒ 중소기업이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, 공동 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
- [운영방안] 기업군에 대한 총 보증한도 내에서 개별기업에게 간편심사로 신속한 보증지원("공동 Credit-Line 방식")
 - ① 특정기업군*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 설정
 - * 예 : 조선 대기업의 특정 수주 선박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群
자동차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차 협력기업群
 - ② 해당 기업群에 포함된 개별 기업의 보증 신청(공동·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운전·시설자금으로 대상 한정)
 - ③ 신보는 공동 프로젝트 내 개별기업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보증 지원
- ※ 조선·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대상 기업군을 추가 발굴하여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

< 공동보증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>



- [향후계획] '20년 상반기중 기업군을 선정하여 시범도입

4

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

◆ 판매기업(하청업체)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'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*' 신설

*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인수자(팩터)에게 매도, 현금화

□ [도입배경]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인 팩토링의 한계* 보완

* 팩터가 구매기업 부도시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쇄부도 우려 등의 문제 발생

□ [도입방안] 신보가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,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지원*

* 결제대금 장기화, 연쇄 부도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 필요성이 제기(국정과제) 되고 있는 약속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서도 의미 존재

- ①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매도하여 조기에 현금화하고, 팩터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
- ②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시범운영하고,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

<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>



<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>



□ [향후계획]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년 하반기중 시범운영

- ① 신보를 혁신금융사업자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

* 현행 「신용보증기금법」상 신보가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근거조항 부재

- ②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시범운영 추진('20.하)

* 대기업이 신보에 팩토링 운용재원 출연 → 협력업체에 팩토링 금융 지원